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3208
----------	------

2025년 12월 1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박상혁 의원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일자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상혁 의원)

1. 제안이유

- 「헌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수학교 설립은 (가칭)동진학교 사례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큼.
- 따라서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은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지향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입법적 ·

행정적·재정적 지지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특수교육기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교는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발생과 연계해 특수학교 설립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박상혁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208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폐교활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8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40년까지 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¹⁾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 해당 계획은 2021년 당시 특수학교가 없었던 8개 자치구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겪는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별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립된 것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선택권은 최근 까지도 특수학교 부족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2025학년도 기준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는 14,909명, 이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전체의 30.2%인 4,50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전인 2021년 대비 각각 1,954명(15.1%)과 462명(11.4%)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시 내 특수학교는 단 1곳도 증설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최근 5년간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동일한 학교 공간에서 더 많은 학생과 함께 수업해야 하는 교육환경의 악화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더욱이 특수학교가 1곳도 없는 중랑구와 양천구 등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기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적정 통학거리 내 교육기관 배정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 2021년 당시 중구는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의 1%인 123명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따라서 해당 계획은 중구가 특수교육 수요가 크지 않다고 보고 특수학교가 없음에도 특수학교 설립 대상에서는 제외함.

[표-1]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현황(기관유형별)²⁾

(단위: 명, %)

연도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특수학급	일반학급	
2025	14,909	4,502 (30.2%)	8,021 (53.8%)	2,345 (15.7%)	41 (0.3%)
2024	14,546	4,531 (31.1%)	7,646 (52.6%)	2,369 (16.3%)	50 (0.3%)
2023	13,888	4,309 (31.0%)	7,297 (52.5%)	2,282 (16.4%)	43 (0.3%)
2022	13,366	4,062 (30.4%)	6,727 (50.3%)	2,577 (19.3%)	55 (0.4%)
2021	12,955	4,040 (31.2%)	6,370 (49.2%)	2,545 (19.6%)	69 (0.5%)

[표-2] 특수학교 미설치지역(자치구 기준) 현황³⁾

구분	자치구	장애유형	설립예정시기	학교명	추진현황
미설립 자치구	중랑구	지적장애	2027.9.	(가칭)동진학교	공사중('25.10.~'27.8.)
	성동구	지체장애	2029.3.	(가칭)성진학교	설계공모중('25.9.~'25.12.)
	금천구	지적장애			
	양천구	지적장애			
	동대문구	지적장애			검토 예정
	영등포구	지적장애			
	용산구	지적장애			
	중구	지적장애	설립 소요가 낮아 공립 특수학교 중장기 기본 계획에 미포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동진학교와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두 학교의 사례는 도리어 특수학교 신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가칭)동진학교는 2012년 설립계획 수립 이후 8번의 후보지 변경을 거쳐 지난 10월 착공하였고,⁴⁾ (가칭)성진학교는 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장애 학생 보호자 단체 등의 양립된 의견에 진통을 겪기도 하는 등⁵⁾ 특수학교 설립 추진의 난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2) 교육부의 2021~2025년 특수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14&s=moe> (검색일 2025-09-03)

3)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777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284, 2025.11.6.)

4)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내부자료(2025.8.28. 제출)

5) (가칭)성진학교 설립 관련 쟁점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때문입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에 폐교재산이 발생하였을 때 폐교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점부터 특수학교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세부적으로 안 제4조의2 제1항은 “교육감이 폐교재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수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교육 기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의2 제1항은 현행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중기(3년) 폐교재산 활용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특수학교 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설치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특수학교 설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안 제4조의2 제2항은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에 있어 특수 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 관리·활용 사무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⁶⁾

19~20쪽을 참조.

6)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교육감이 지정 ·
고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4조의2(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폐교 재산의 우선 활용)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u></p> <p><u>1. 「유아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u></p> <p><u>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u></p> <p><u>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교육감이 지정·고시한다.</u></p>